

□ 전북연구개발특구

○ 사업화촉진지구

구 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전주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 2008-254호 (2008. 10. 06) - 전주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 2008-481호 (2008. 12. 26)
	입주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3, 21, 24, 25, 26, 27, 28, 29, 30, 31, 33, 58, 59, 60, 61, 62, 63, 66, 70, 71, 72, 73, 85, 2013, 2020, 2031, 2032, 2041, 2229에 해당하는 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구 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 2019.09.05.
	입주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22,23,25,26,27,28,29,30,33에 해당하는 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된 건축물
산업공공 시설구역		-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단, 지구단위계획상 기준비율 충족 필요)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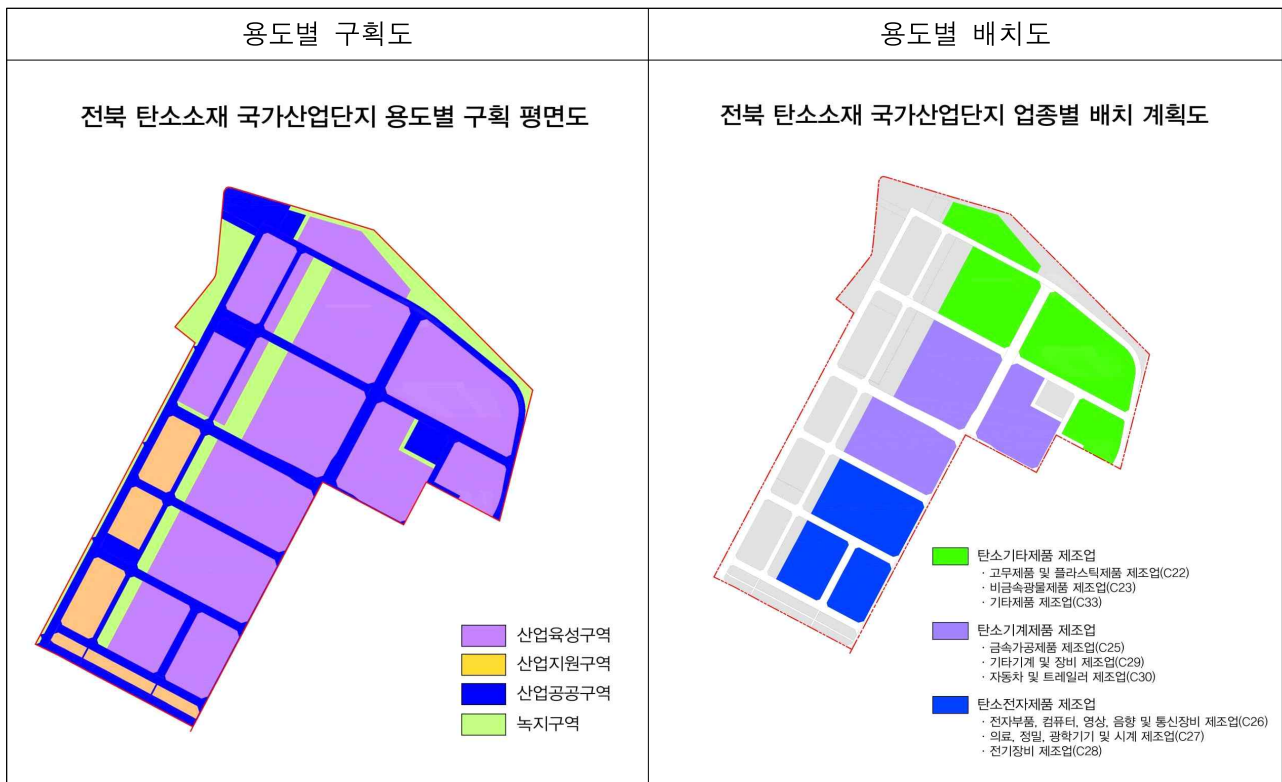
[산업육성구역 불허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 2019.09.05.)

·허용용도 해당업종 중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등 제한

구분		해당업종
산업 육성 구역	탄소기타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 타이어재생업(22112)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22192)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22212)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22214)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1)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2222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2224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탄소섬유제조업(23995)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25111)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25112)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25914)
		• 금속 열처리업(25921)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
		• 날붙이 제조업(25931)
		•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25934)
		•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2)
		• 금속선가공제품 제조업(25944)
		•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25991)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2599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30110)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1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20)
		•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30391)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30393)

구분		해당업종
산업육성구역	탄소전자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261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6211)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방송장비 제조업(26421)
		•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9)

○ 용도별 구획도 및 배치도



구 분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1단계)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조성 1단계 사업」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전주시 고시 제 2011-71호 (2011. 06. 20) -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조성 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전주시 고시 제 2015-44호 (2015. 04. 22)
	입주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3, 17, 20423, 23, 24, 25, 26, 27, 28, 29, 30, 31, 70, 7291, 76390에 해당하는 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 내 전후방산업관련효과, 지역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지원시설구역내 허용된 건축물로써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구 분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3-1단계)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전주시 고시 제 2015-58호 (2015. 05. 28) -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 전주시 고시 제 2015-59호 (2015. 05. 28)
	입주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20, 23995, 23999, 35120, 70에 해당하는 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된 건축물 -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주차장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구 분		전주첨단벤처단지
산업 복합 구역	관련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주시고시 제2019-99호)
	입주 가능 업종	- 도금 및 도장업종,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주시고시 제2019-99호)」 별표1 불허용도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별표1 불허용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물환경보전법)

[불허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 중 세세분류(10211, 10213, 10219, 1022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11)음료 제조업	·업종 전체
(12)담배 제조업	·업종 전체
(13)섬유제품 제조업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131) 중 세세분류(13103, 13104)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132) 중 세세분류(1321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 중 세세분류(13994)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142)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세세분류(15110)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제제 및 목재 가공업(161) 중 세세분류(16102, 16103) • 나무제품 제조업(162) 중 세세분류(16211, 1621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세세분류(17110, 17121, 17122, 17123, 17124, 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중 세세분류(19210)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203)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세세분류(20412, 20421, 20422, 20423, 20492, 20493, 20494, 20499) • 화학섬유 제조업(205)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중 세세분류(21101)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업종 전체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232)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중 세세분류(23911, 23919, 23991, 23992, 23993, 23994, 23999)
(24)1차 금속 제조업	• 업종 전체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 중 세세분류(25922)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자 부품 제조업(262) 중 세세분류(26221, 26292, 26299)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
비제조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 전기업(351) 중 세세분류(35113, 35119) 및 공기 조절공급업 • 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3)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처리업(382) 중 세세분류(3821, 3822)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② 제1항 외 허용용도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는 불허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나목에 따른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중 공통불허용도에 해당하는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일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업종을 영위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5호 발전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업종을 영위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8호 장례시설	

○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구 분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첨단과학연구단지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승인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 2017-100호(2017. 05. 25)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08-242호(2008.9.19)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16-123호(2016.7.1)
	입주 가능 업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7, 21, 22, 24, 25, 27, 29, 30, 31, 35, 52, 70, 20, 23, 26, 28, 10797에 해당하는 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 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마이크로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ME), 메카트로닉스(MT), 신소재, 생물산업, 기존산업의 첨단분야(자동차), 기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7,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31, 52, 70, 76390에 해당하는 업종 *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은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물류시설용지내 입주한 기업에 한함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 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구 분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산업육성구역	관련 규정	-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 2016-73호 (2016. 04. 29)
	입주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1, 20, 21, 22, 25, 26, 27, 28, 29, 30, 31, 70, 75, 85에 해당하는 업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7호의 창업보육센터,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의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의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단,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 지역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